

의안번호	제3089호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6. 4. 24.

#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8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4. 24.

제출자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법제처 권고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개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사회단체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의무 개정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
- 2) 「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1) 기획예산담당관: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
  - 해당사항 없음[기획예산담당관-4799(2026. 4. 1.)호]
- 2)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 -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1585(2026. 3. 13.)호]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583호
  - 가) 예고기간: 2026. 3. 11.~2026. 3. 31.(20일간)
 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 조문 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으로 하여금 보험”을 “보험”으로, “가입 하계”를 “가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0조(보험가입)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「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<u>한국자유총연맹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</u> 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보험가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보험</u>----- <u>가입</u> ----- -----.</p>

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재정소요 있음

가. 관련 조문: 안 제10조

나. 비용발생 요인: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

다. 소요 예산: 4,000천 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 
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  
추계를 미첨부 함.

작성자: 행정과장 이 기 동

## 참고

## 관계법령(발췌)

### □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제14조(자원봉사자의 보호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

제10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
2.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
3.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
1.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, 후유장애 및 의료·입원·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
2.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

### □ 「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22조(보험가입)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·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